

의안번호	2200555
의 퇴 인	임광현의원
회 답 일	2024. 6. 18.
추 계 번호	24C0427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우리아이자립펀드 운영을 위해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.6조원, 2030년 6.6조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.5조원(연평균 7.1조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5~2029년

(단위: 조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우리아이자립펀드 (안 제44조의2)	7.6	7.4	7.1	6.8	6.6	35.5	7.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4조의2(우리아이자립펀드)	○ 국가는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한 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(이하 “정부적립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함 ○ 정부적립금은 해당 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 ○ 보호자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음 ○ 아동은 적립금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음. 다만,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중도에 인출할 수 있음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4조의2(우리아이자립펀드)	○	—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18세 미만 아동 수는 통계청의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)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함
- 우리아이자립펀드 운영 및 관리는 현재 아동복지를 지원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, 추가적인 조직 및 인력의 확대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
-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우리아이자립펀드(안 제44조의2)

- 개정안에 따라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 - 현재 「아동수당법」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국가가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
□ 추가재정소요는 정부적립금 지급대상자인 18세 미만 아동 수에 1인당 월 지급액(10만원)을 곱하여 추계함

○ 정부적립금 지급대상자인 18세 미만 아동 수는 통계청 「장래인구추계」(2023.12.) 중위시나리오를 활용하여 산출함

□ 우리아이자립펀드 정부적립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5.5조원으로 추계됨

[표 2] 우리아이자립펀드 정부적립금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(단위: 천명, 만원, 개월, 조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지급대상자 수(A)	6,358	6,136	5,931	5,700	5,486	
월 지급액(B)	10	10	10	10	10	
지원개월 수(C)	12	12	12	12	12	
합계(A×B×C)	7.6	7.4	7.1	6.8	6.6	35.5

주: 지급대상자 전원에게 매년 12개월 동안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함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통계청 2023년 「장래인구추계」(중위시나리오)의 18세 미만 아동 수를 기초로 산출한 결과로, 향후 실제 18세 미만 아동 수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우병혁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우병혁	02-6788-3739	wbhcd@assembly.go.kr